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Office for Civil Rights • Washington D.C. 20201 • (202)619-0403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에 의한 권리 (연방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보건 및 복지 프로그램)

민권 담당 사무소(OCR)

미국 보건 복지부(DHHS)의 민권 담당 사무소(OCR) 는 DHHS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보건 및 복지 제공 단체나 조직에 의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 가운데 하나가 1975년의 연령차별법입니다.

연령차별법이란?

1975년의 연령차별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활동에 있어 나이에 근거하여 차별이 생기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법입니다. 연령차별법은 모든 연령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용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법에서의 연령차별은 특히 공공분야와 사적인 분야 모두 구체적으로 고용 관행과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40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용법 하에서의 연령차별에 대한 항의는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인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Washington, D.C. 20506으로 보내야 합니다.)

연령차별법과 DHHS의 연령 규정(45 CFR 9부에 기재)은 각 DHHS 수취인/기관에 적용됩니다. 연령차별법에는 제한된 상황 하에서 연령을 구별하거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불균형을 결과하는 연령 외 다른 요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몇 가지의 특정한 예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 차별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되었으며 또한,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입법부가 채택한 연방, 주 또는 지방 단위의 법이나 조례의 일부로 포함된 연령구분:

- -- 연령을 기준으로 혜택이나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또는
- --연령과 관련된 조건에 대한 참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 --연령과 관련된 조건에 의도된 수혜자나 대상 그룹에 대해 설명 되어 있는 경우.

민권 담당 사무소(OCR)에 항의를 제출하는 방법

DHHS 수혜자들의 연령차별에 대한 항의는 개인, 집단,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OCR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OCR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180일의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항의서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OCR에 차별 항의서(Discrimination Complain Form)를 요청하십시오:

-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항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해당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진술-즉, 배우자, 변호사, 친구 등 -을 포함해야 합니다.)
- 차별 행위를 했다고 믿는 단체나 기관의 이름과 주소.
- 차별을 받은 방법, 이유, 시기.
- 기타 관련 사항.

항의서를 아래의 OCR의 지역 사무국이나 본 정보서 앞에 적혀 있는 본부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연령차별법과 관련해서 항의 제기를 한 후에는?

OCR은 항의서를 일단 받으면 , 또 다른 개별적, 모든 항의를 선별해서 연령차별법 하에서 다루어지는행동조치를 설명하며 또한 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연방 중재 및 화해 서비스(FMCS)로 보냅니다.

항의를 제기한 사람과 수취인/기관은 항의와 관련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중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MCS의 중재 과정은 연장되지 않는 한, OCR로 항의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OCR은 만족스럽게 중재가 이루어진 항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재를 통해 FMCS가 항의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중재 합의가 위반되어 해당되는 항의가 다시 오픈된 경우, OCR은 해당 항의를 조사합니다.

항의자는 DHHS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DHHS가 수취인/기관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 이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든지 간에, OCR에 항의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수취인/기관이 관련된 동일한 혐의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경우 항의자는두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는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OCR을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계속 항의가 진행되도록 선택하는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선택되든,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OCR은 법률의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항의에 대해 OCR이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OCR은 이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기관으로 이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Director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Room 509-F
Washington, D.C. 20201

긴급 비상용 직통전화: 1-800-368-1019(음성) 1-800-537-7697 (청각 장애자용 원격통신)

전자우편: ocrmail@hhs.gov 웹 사이트: http://www.hhs.gov/ocr